

인증심사원 자격교육에 관한 세부사항(제10조 관련)

1. 교육기관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2. 교육신청 및 접수

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.

3. 교육내용 및 평가

가.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한다.

- 1) 이론교육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, 친환경 관련 법률, 심사기준,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으로 한다.
- 2) 실기교육은 인증신청서에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확인, 분석용 시료채취, 평가방법 등 현장 실무로 한다.

나.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4.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

가.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90% 이상 수강하고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나.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